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자회사 임직원 여부		
					해당여부	자회사 법인명	자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2025년도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특례적용신청서(별지 제6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의 "④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3.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